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 · 법인 · 정강자 · 정현백 |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T.02-723-5300 F.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논평]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날 짜 2015. 1. 21. (총 5 쪽)

논 평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명분도, 동의도 원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대통령 한마디에 4대입법 된 노동법개정안, 현 정권의 본질 보여줘

1. 고용노동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노동개악과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의 강행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파견법을 중장년일자리법으로,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명명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실질을 왜곡·은폐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기간제법의 추진이 중단되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도 타협 없이 5개의 노동법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 대통령 담화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는 현 정권과 이번 노동개악의 본질을 보여준다.

2. 참여연대가 작년 12/21(월)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발송한 공개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2702)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답변(별첨자료 1 참고)하면서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중부청에서는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측 일방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가 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방식으로 강행된다. 희

망퇴직을 통해 쫓겨난 노동자를 계약직의 형태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에 다름 아니며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지만 이것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 불·편법적 대량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3.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미비한 근로감독행정을 개선하기는커녕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는 이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게 '우선' 시정권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위반이 적발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과태료로의 전환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위상을 훼손한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제재 강화는 집무규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된다.

4. 발표된 자료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라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두루누리지원사업의 차등지원 계획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지원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 탓 하고 있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건도 정부·여당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하한액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만 몰

두한 결과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정책이 현행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5. 사용자 일방의 이익을 위해 남발되는 대규모 해고와 전 산업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변함없다. 급기야 행정부 수반이 민간이익단체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며 국회를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어떤 양보나 합의도 없다던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노동개혁 4대입법으로 축소되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고수해온 단호한 입장이 수정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배경도 확인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설문조사를 근거로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담화 이후 수정된 정부의 입장은 지금의 노동개악을 누가, 무엇을 위해 대변하고 관철시키려 하는지 보여준다.

6. 최소한의 명분이었던 915노사정합의조차 파기된 현 시점에서 정부는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이 이미 처리된 것인 양 2016년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입법도, 양대 지침도 이제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마저 후퇴되거나 실종된 채 맞이한 집권 4년 차이다. 지금이라도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일방통행의 국정운영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초래할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의 폐기여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별첨자료〉 1.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확인: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2702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2.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최근 두산인프라코에서 진행된 희망퇴직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우선 희망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입니다. 다만, 희망퇴직의 이름이나 형식을 빌렸더라도 사용자의 강요가 있을 경우 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4. 두산인프라코어는 해외투자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글로벌 건설시장의 장기침체로 실적이 부진하여 창원공장 전체를 매각 진행 중인 등 경영사정 악화로 우선 사무직에 대해 희망퇴직을 하고 생산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강압에 의하였다거나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중 교육과정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고용노동부 중부청에서는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정부가 마련하는 근로계약 해지 관련 지침은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근로계약 해지를 방지하고자 인력운영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

로써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보다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침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판례에서 엄격히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분석하여 "채용-평가-보상-직업능력개발-배치전환-퇴직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직무·능력·성과 중심 인력운영 방식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는 궁극적으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통해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이루고 노사분쟁을 예방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쉬운해고를 위한 것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